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

2017. 3. 13

<편집상 빈페이지>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차두삼

【연구기간】

2016년 12월 13일~ 2017년 3월 13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희수(한국관세무역개발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김영춘(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하정주(한국관세무역개발원 책임 연구원)
이주영(한국관세무역개발원 책임 연구원)
김세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원)
이유진(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원)
이동규(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2
제2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13
1. 위생용품 관리체계 현황	14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21
3.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 문제점	34
제3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HSK연계	39
1. 품목분류제도 개요	40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KSK 연계	45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KSK 세분화 방안	72
제4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수입동향분석	79
1. 수입동향분석 개요	80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수입동향 분석	82
3. 시사점	96
제5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99
1. 관련 규정 개정안	100
2. 규제영향분석	108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115
제6장 결론	125
참고자료	128
부록	
부록 1. HSK별 위생용품 수입실적	129
부록 2. 위생용품 관련 법령 일부	144
부록 3. 위생용품 관리법안(생일증의원 대표발의)	148
부록 4. 수입통관제도	161

표 차례

<표 1> 위생용품의 현행관리주체	51
<표 2> 舊 「공중위생법」 과 제정안의 위생용품 비교(권익위 자료)	81
<표 3> 1회용 기저귀 안전요구사항	32
<표 4>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요구 사항	52
<표 5> 1회용 성인용 면봉 안전요구사항	72
<표 6> 어린이용 면봉 안전요구사항	82
<표 7>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현황 요약표	23
<표 8> 최근 3년간 수입위생용품 통관 및 검사현황 비교	53
<표 9> HS품목표의 구성	24
<표 10> HSK의 구조	34
<표 11> HSK의 실제활용	44
<표 12> 1회용 포크·나이프의 물품 설명	46
<표 13> 1회용 포크·나이프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46
<표 14> 1회용 포크·나이프의 HSK 연계	46
<표 15> 1회용 빨대의 물품 설명	74
<표 16> 1회용 빨대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74
<표 17> 1회용 빨대의 HSK 연계	74
<표 18>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물품 설명	84
<표 18>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HSK 연계	84
<표 20>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94
<표 21>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105
<표 22>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115
<표 23> 기저귀 세 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115
<표 24> 생리대, 팬티라이너의 물품설명	25
<표 25> 생리대, 팬티라이너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25
<표 26> 생리대, 팬티라이너의 HSK 연계	35
<표 27>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45
<표 28>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55
<표 29>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중량기준)	55
<표 30>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신고건수기준)	75
<표 31>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75
<표 32>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85
<표 33> 화장지(미용, 화장실용)의 물품 설명	95
<표 34> 화장지(미용, 화장실용)의 품목분류 해외사례	95
<표 35> 화장지(미용, 화장실용)의 HSK 연계	95
<표 36> 화장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116

<표 37> 화장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1 6
<표 38> 화장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2 6
<표 39> 1회용 종이타월·종이행주의 물품 설명	3
<표 40> 1회용 종이타월·종이행주의 품목분류 해외사례	3
<표 41> 1회용 종이타월·종이행주의 HSK 연계	3
<표 42> 종이타월/종이행주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5 6
<표 43> 종이타월/종이행주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금액기준)	5 6
<표 44> 종이타월/종이행주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6 6
<표 45> 면봉의 물품 설명	76
<표 46> 면봉의 품목분류 해외사례	76
<표 47> 면봉의 HSK 연계	8 6
<표 48> 면봉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9 6
<표 49> 면봉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9 6
<표 50> 위생용품별 HSK 별 최근 3개년 수입 추이(전년대비 증감을 분석)	0 7
<표 51> 위생용품별 HSK 별 최근 3개년 수입 추이(2016년 수입액 비중)	1 7
<표 52> 표준품명제도(HSK 세분화) 예시	2 7
<표 53> 위생용품의 표준품명 관리(안)	3 7
<표 54> 위생용품별 수입통계 추출용 거래품명 DB	18
<표 55> 위생용품별 3개년 수입추이(중량 및 금액 기준)	3 8
<표 56> 위생용품별 3개년 수입추이(신고건수 및 업체수 기준)	4 8
<표 57> 기저귀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5 8
<표 58> 기저귀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5 8
<표 59> 면봉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6 8
<표 60> 면봉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6 8
<표 61> 생리대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7 8
<표 62> 생리대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7 8
<표 63> 종이타월/종이행주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8 8
<표 64> 종이타월/종이행주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8 8
<표 65> 팬티라이너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9 8
<표 66> 팬티라이너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9 8
<표 67> 화장지의 국가별 수입 추이(순위 분석)	0 9
<표 68> 화장지의 국가별 수입 추이(비중 분석)	0 9
<표 69> 위생용품별 업체규모별 수입 추이	30
<표 70>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생용품별 업체규모별 수입 추이	49
<표 71>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생용품별 업체규모별 수입 추이	59
<표 72> 통합공고 개정안 신·구대조표	101
<표 73> 세관장확인고시 별표2 개정안	1
<표 74>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41
<표 75> (3안)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연계 세번 중 세관장고시 타법령에 연계된 세번	71
<표 76> 위생용품의 표준품명 관리(안)	71

그 립 차 례

<그림 1> 수입위생용품 관련법령 체계	51
<그림 2> 현행 위생용품의 신고·검사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17
<그림 3> 수입물품검사 종류 및 소요일수	71
<그림 4> 위생용품별 관리 개선안 개요도	02
<그림 5> 수입위생용품 관리체계	43
<그림 6> 위생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73
<그림 7> HS 품목분류체계	24
<그림 8>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신고건수기준)	0 5
<그림 9>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1 5
<그림 10>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1 5
<그림 11>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4 5
<그림 12>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4 5
<그림 13> 생리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5 5
<그림 14>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7 5
<그림 15>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금액기준)	7 5
<그림 16> 팬티라이너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8 5
<그림 17> 화장지 세 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1 6
<그림 18> 화장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금액기준)	1 6
<그림 19> 화장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중량기준)	2 6
<그림 20> 종이타월/종이행주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현황(신고건수기준)	5 6
<그림 21> 종이타월/종이행주 연계 HSK별 수입실적 현황(금액기준)	5· 6
<그림 22> 종이타월/종이행주 연계 HSK별 수입실적 현황(중량기준)	6· 6
<그림 23> 면봉 연계 HSK별 수입실적 현황(금액/중량/신고건수기준)	8· 6
<그림 25> HSK 6307.90-9000의 품목별 수입실적	9· 6
<그림 25> HSK 9619.00-1090(기타)의 수입 비중 분석(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4· 7
<그림 26> HSK 9619.00-9000(기타) 수입 비중 분석(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5· 7
<그림 27> HSK 4818.20-0000(기타)의 수입 비중 분석(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6· 7
<그림 28> HSK 6307.90-0000(기타)의 수입 비중 분석(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7· 7
<그림 29> 수입금액 기준 구간별 업체규모 정의	19
<그림 30> 위생용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기본방향	1
<그림 31> 자율관리우수업체(녹색기업) 통관절차 개요도	01
<그림 32> 위생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2
<그림 33> 협업검사 개요도	11

<편집상 빈페이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활용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발의 중
 - 그동안 소관 부처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있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면봉, 기저귀 등 개인위생용품 10종을 위생용품 범위에 추가하는 등 개인위생용품에 범위 구체화 및 안전관리 중요성 재인식
 - 이에 제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의 위생용품에 더하여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종이행주(키친타월), 종이타월(핸드페이퍼), 면봉, 기저귀,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10개 품목을 위생용품에 추가하고자 함
 - *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되던 위생용품이 '99년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구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에 “관련 법률 제정 시까지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
 - * 위생용품의 범위도 구법에는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식당용 물티슈 등 식품판매업소 제품 위주로 한정되면서, 면봉이나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의 개인위생용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던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됨
- 특히, 저가의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국내 진입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통관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이에 새롭게 추가된 위생용품 10종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 제정되는 「위생용품관리법」 상 수입구비요건을 통해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필요
 -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통합공고에 계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

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확인절차를 수행함

- 위생용품 신규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수입신고 관련 조항 신설 및 정확한 품목분류(HSK연계)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성 제고 필요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수입품목 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조사
 - 기저귀 등 총 10종의 위생용품에 대한 HSK현황 조사
 - * 1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면봉, 종이행주(키친타올), 종이타월(핸드페이퍼), 기저귀, 생리대, 팬티라이너
 - 연계된 HSK에 기반한 3개년도 수입동향조사
 - 기저귀 등 일부 위생용품은 ‘기타(other)’세번으로 분류되어 통관관리 효율성 저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품명 표준화(HSK 세분화) 방안 마련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 추가지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청(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마련
 -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1회) 및 필요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연구방법

○ 기존 문헌조사

- 위생용품 품목분류의 해외결정사례 조사

○ 무역통계분석

- 수입신고서상의 거래품명을 이용한 위생용품 3개년도 수입동향분석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결과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HS품목 분류 등의 통관행정 유경험자, 관세사 등 자문 진행

○ 이해관계자 간담회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

- 위생용품 통관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철저한 수입관리

☐ 활용방안

- 위생용품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2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연왕

1.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3.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의 문제점

제2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1.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¹⁾

1) 위생용품 관리체계 현황

□ 국내 위생용품 관련법령 현황

- 현재 국내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법률은 1999년 2월 폐지²⁾된 「공중위생법」으로서, 이후 새롭게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³⁾에서 폐지된 「공중위생법」(이하 “舊 「공중위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처리업⁴⁾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舊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舊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입법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남
- 일례로 舊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일회용 물컵·젓가락·손가락·위생종이·이쑤시개 등의 ‘기타 위생용품’의 경우 여전히 날개 포장지에 제조연

1) 2016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를 요약정리함

2) 폐지 사유 : 풍속 관련 다른 법률과 규제중복 사유로 폐지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만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하고 식품위생은 해당법률에서 규제

3) 舊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법률 제5839호, 199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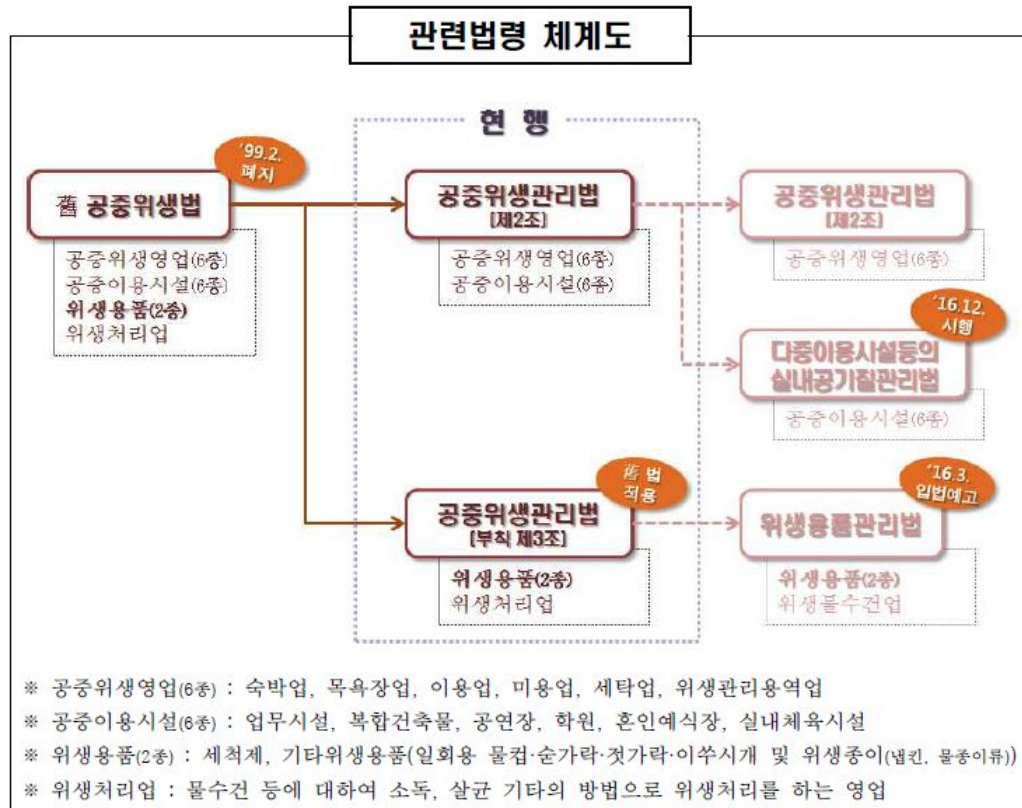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4) 위생용품제조업은 세척제,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며, 위생처리업은 물수건을 살균 및 처리하는 업종임

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1> 수입위생용품 관련법령 체계



※ 출처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 위생용품 관련법령 제정

○ 식약처는 민원불편 해소 및 위생용품의 법령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중

－ 현재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기로 함

<표 1> 위생용품의 현행관리주체

분 류	담당기관
법령소관	보건복지부
수입신고	서울·인천·부산지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지역 : 국립검역소
제조업신고·위해관리	지방자치단체
세척제 성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이

- 입법예고(3. 18(40일간)), 법제처 심사(10월), 차관·국무회의·국회 제출(10월)
- 법 제정 후 하위법령 정비 시 전산 수입신고 등 근거 마련 예정

【법안 주요내용】

- ① 위생용품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 물수건, 기타위생용품(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냅킨, 물티슈)
- ② 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 ③ 위생용품 수입신고 의무(안 제7조)
 -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약처장에게 신고
- ④ 기타 위생용품 기준, 규격, 표시기준 규정(안 제9조, 제10조) 등

□ 국내 수입위생용품 관리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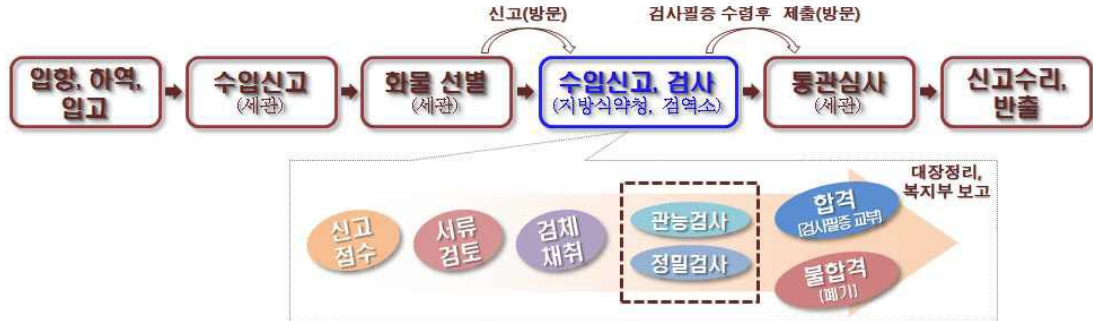
- 기존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 소관법령인 舊 「공중위생법」 제14조의 2 제3항⁵⁾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⁶⁾ 규정에 따라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신고 및 검사
 - 복지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통관장소에 따라 지방식약품안전처장과 국립검역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접수 및 검사
 - 통관완료 전에 수입물품검사(서류⁷⁾, 관능⁸⁾, 정밀검사⁹⁾)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 5) 제14조의2(제조업의 신고등) ③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6) 제33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원료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10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 ③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위생용품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수입신고 사항을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 7)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는 검사
 - 8)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색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
 - 9)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순단에 의하여 규격 및 기준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

있으며, 검사기준은 복지부 고시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

* 단,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은 식약처 고시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그림 2> 현행 위생용품의 신고·검사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 출처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폐기하고, 적합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 교부, 미신고시 舊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림 3> 수입물품검사 종류 및 소요일수

서류검사(7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외화획득용 수입승인 제품	원료수입 또는 서류검사 대상중 검사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정밀검사 1년내 재수입 제품)	최초 검사, 정밀검사 1년 경과 후 수입된 제품 등

- 신고수리 대장 작성 후 복지부에서 분기별 수입신고¹⁰⁾ 현황 보고

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로서 서류 및 관능검사 포함

10) '11년 구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 전산시스템내 위생용품 항목 신설, 내부적으로 신고 및 검사 실적 관리중(국립검역소 공동이용)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 舊 공중위생법과 제정안의 위생용품 비교

- 제정안은 현재 안전관리 방치 및 산재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위생용품 등은 크게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됨
- 이 중 세척제, 행굼보조제 등은 舊 「공중위생법」에서 관리되고 있던 품목이며, 위생물수건은 위생용품에는 포함되지 않고 위생처리업은 영업의 한 종류로 관리되고 있었음
-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6. 7.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위생물수건과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종이행주(키친타월), 종이타월(핸드페이퍼), 면봉, 기저귀 등 9개 품목을 위생용품에 추가하고자 함

<표 2> 舊 「공중위생법」과 제정안의 위생용품 비교(권익위 자료)

대 상	舊 「공중위생법」	제정안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세제
기타위생용품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아래 종류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냅킨·물종이)	(법률)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으로 포장한 물티슈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종이행주, 종이타월, 면봉·기저귀
행굼보조제	-11)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
위생물수건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한 물수건

11) 행굼보조제(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는 (구) 「공중위생법」에는 별도 정의가 없고,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음

□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 위생용품

- 본 보고서에서는 제정안에서 추가된 9개 품목 중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8종과 더불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신규품목으로 추가한 다음의 총 10종의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화장지, 종이행주(키친타월), 종이타월(핸드페이퍼), 면봉, 기저귀,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10종

□ 제정안에 따른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현행 관리체계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 제정안에 따른 위생용품 중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등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기구”¹²⁾의 정의에도 해당하는데,
 - 제정안은 식품용 기구 중 일부 일회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함
 - 1986년 舊 「공중위생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일회용 젓가락 등은 식품용 기구가 아닌 위생용품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여 향후에도 위생용품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¹³⁾
- (화장지, 면봉, 기저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기저귀와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의 구조 및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제품의 성분, 독성 등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공중보건안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 품목을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규정관리하고자 함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닿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13) 제정안은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하여 부칙에서 타법개정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의 “기구”의 정의에서 위생용품은 제외하고 있음.

- 이는 최근 가슴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추가 규정의 배경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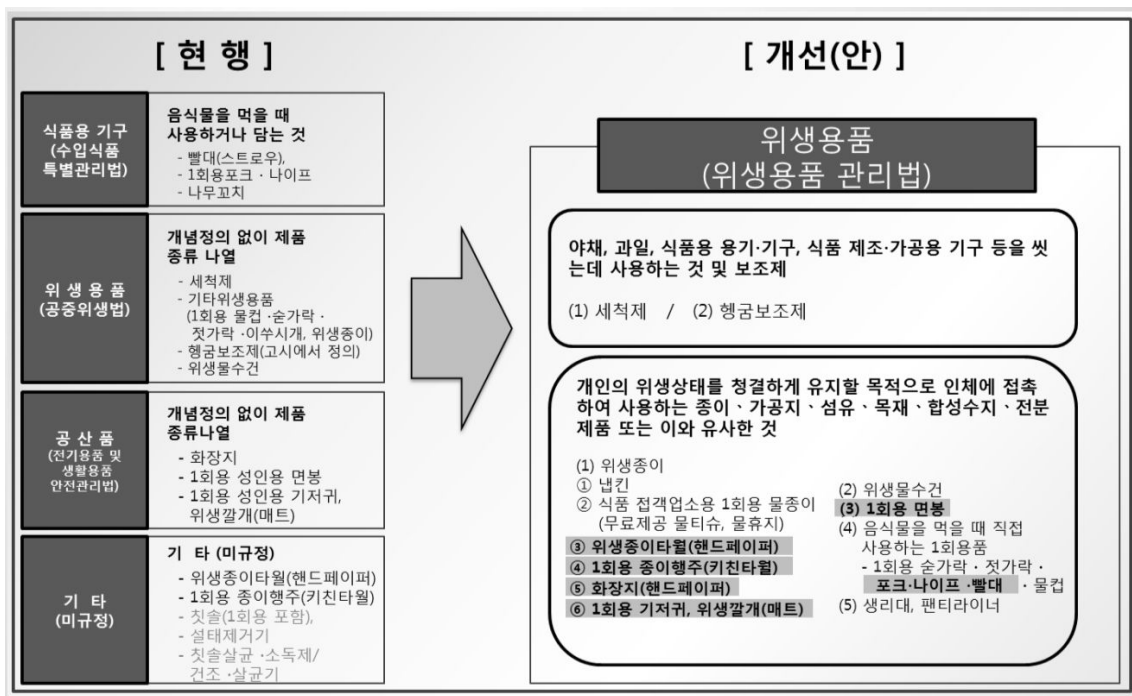
○ (생리대, 팬티라이너)

- 제정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현재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음

○ (종이행주(키친타월), 종이타월(핸드페이퍼))

- 안전규격, 성분 및 품질의 표시기준이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을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규정·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함

<그림 4> 위생용품별 관리 개선안 개요도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1) 1회용 포크·ナイ프·빨대

☐ 관련 법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절차

- 1회용 포크·ナイ프·빨대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기구에 해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¹⁴⁾
 -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세관장확인고시 수입요령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안전기준 및 규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의 재질별 규격

2) 1회용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 관련 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입절차

○ 성인용 1회용 기저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 제품¹⁵⁾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확인신고 등)¹⁶⁾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16) 시행규칙 제26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8.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9.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수입요령 : 일회용 기저귀는 폐지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동일모델확인 또는 공산품시료확인 및 사전통관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안전기준

○ 자율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안전요건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1 일회용 기저귀

<표 3> 1회용 기저귀 안전요구사항

항 목	품 목	1회용 기저귀		위생깔개 (매트)
		유아용	성인용	
pH		3.0 ~ 10.0		
형광증백제 이동		형광증백제 이동이 없을 것		
폼알데하이드(mg/kg)		검출되지 않을 것 ¹⁾	75이하	300이하
염소화페놀	PCP ²⁾	0.5 이하		0.5 이하
류(mg/kg)	TeCP ³⁾	0.5 이하		0.5 이하
아조염료 ⁴⁾ (mg/kg)		각각 30이하		

비 고 1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20mg/kg 미만임을 말한다.

2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TeCP란 2,3,5,6-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4 염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1회용 어린이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 관련 법규

-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절차

- 어린이용 기저귀는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 상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¹⁷⁾임
-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¹⁸⁾
 - －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수입요령 : 어린이용 기저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확인 또는 공산품시료확인 및 사전통관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17)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18) 어린이제품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
관 확인서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 안전요건

○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0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표 4>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요구 사항

항 목 \ 품 목		1회용 기저귀	위생 깔개 (매트)
pH		3.0 ~ 10.0	
형광증백제		용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mg/kg)		20 미만 ¹⁾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 (mg/kg)	PCP ²⁾	0.5 이하	0.5 이하
	TeCP ³⁾	0.5 이하	0.5 이하
아조염료 ⁴⁾ (mg/kg)		각각 30이하	

비 고 1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은 75 mg/kg 이하

2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TeCP란 2,3,5,6-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4 염색한 경우만 적용한다.

4) 1회용 성인용 면봉

☐ 관련 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입절차

- 성인용 1회용 면봉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¹⁹⁾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²⁰⁾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 － 구비요건 :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수입요령 : 면봉은 폐지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장제11절제82조의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함

☐ 안전기준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 안전요건

-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3 면봉

<표 5> 1회용 성인용 면봉 안전요구사항

유해성분	기준치
일반세균 및 진균수	각 300 CFU/g 이하
형광증백제	검출 안 됨

5) 1회용 어린이용 면봉

□ 관련 법규

-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절차

-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²¹⁾임

-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급자적합성성 확인 등)²²⁾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2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어린이제품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시행 2018.2.1.]

☐ 안전요건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면봉

<표 6> 어린이용 면봉 안전요구사항

유해물질	허 용 치 (이하)	시험방법
일반세균 및 진균수	각 300 CFU/g	5.1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5.2

6) 생리대, 팬티라이너

☐ 관련 법규

- 「약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절차

- 생리대, 팬티라이너는 「약사법」 상 의약외품²³⁾임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²⁴⁾
 -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수입요령 : 생리대·팬티라이너·타폰 등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²⁵⁾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23)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24)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약품등의 생산·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을,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限外麻藥)]을 포함하되,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등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기준

- 의약외품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 안전규격

- 의약외품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2] 의약외품각조 제1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제2조제2호 관련)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 팬티라이너)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7) 화장지(미용, 화장실용)

☐ 관련 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입절차

- 화장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²⁶⁾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²⁷⁾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 구비요건 :

☐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해당안됨

☐ 현행 통합공고 대상품목 해당 여부 : 해당

- 수입요령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장제11절제82조의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함

☐ 안전기준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유해물질 안전요건

-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7 화장지

－ 폼알데하이드 용출 폼알데하이드 용출량이 4 mg/L 이하이어야 함.

－ 형광증백제 미용화장지에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생산과정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8)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 현재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은 소관 법령, 규격 및 표시기준 부재로 無검사 통관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 화장실에서 손, 얼굴 등을 씻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타월

9) 1회용 종이타월(핸드페이퍼)

☐ 현재 위생 종이타월(핸드페이퍼)은 소관 법령, 규격 및 표시기준 부재로 無검사 통관

-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 주방도구를 닦거나 청소 및 오물 제거, 요리과정에서 물기 및 기름기 제거용으로 사용

<표 7>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현황 요약표

제품종류	현행							
	관련 법령	소관 부처	규격 및 기준	안전규격	요건 구비	구비요건	통합공고 수입요령 [품공법]	세관장고시 수입요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회용 포크, ナイ프, 빨대	「수입식품안 전관리 특별법」상 기구	식약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 목재류, 전분제)	통관전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3.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 82조의 2에 따른 자율 안전확 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 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합성수지제 주방 용 품 및 일반용품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 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 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회용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매트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산업부	자율안전확인대 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류	통관전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동일모델확인 또는 공산품시료확인 및 사전통관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1회용 기저귀 (위생깔개 매트 포함)	「어린이제품 특별안전법」 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식약처	안전확인대상어 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pH, 형광증백제, 포름 알데히드, 염소화페놀 류, 아조염류	통관전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확인 또는 공산품시료확인 및 사전통관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1회용 성인용 면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	산업부	안전·품질표시대 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 준	일반세균 및 진균수, 형광증백제	통관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함 ① 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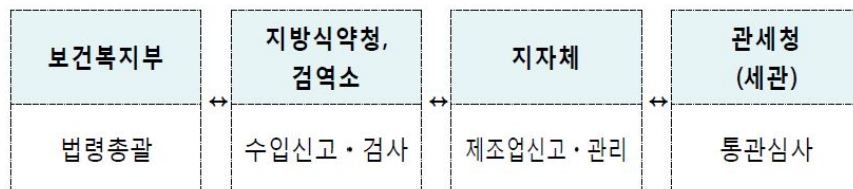
제품종류	현행							통합공고 수입
	관련 법령	소관 부처	규격 및 기준		안전규격	요건 구비	구비요건	
	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상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산업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일반세균 및 진균수, 형광증백제	통관전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의 공산품 서류확인 및 사전 통관 확인서	
어린이용 1회용 면봉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산업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일반세균 및 진균수, 형광증백제	통관전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의 공산품 서류확인 및 사전 통관 확인서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약사법」상 의약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생활 용품	식약처	의약품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 팬티라이너)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 히드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탐폰) 이물, 색소, 산 및 알 칼리, 형광증백제	통관전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약사법] 1.다음의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 전자문서교환방식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입할수있음 ① 탐본, 생리대, 팬
화장지 (미용, 화장실용)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생활 용품	산업부	안전·품질표시대 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 준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미용·불검 출, 화장 실용·생산과정에서 미사용	통관전		[품질경영및공산품인 1.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안전·품질표시를 하 ① 화장지
1회용 종이타월 (화장실용 핸드페이퍼)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회용 종이행주 (키친타월)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 현행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의 문제점

1)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未신고·無검사 통관으로 국민건강 위협방치

- (문제점) 상당수의 수입위생용품이 미신고·무검사 통관되는 등 통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
 - 舊 「공중위생법」 폐지 후 18년 동안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미신고자 양산됨
 - － 현행법상 복지부 소관이나, 지방식약청과 국립검역소가 신고·검사 업무처리
 - － 「위생용품관리법」 입법시까지 복지부 주도로 식약처 협조를 받아 수입위생용품 총괄관리

<그림 5> 수입위생용품 관리체계



※ 출처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 － 공중위생법상 수입신고가 의무사항임에도 일부업자들은 영업상 필요²⁸⁾에 따라 신고하는 등 無신고·無검사 통관되고 있는 실정임
- － 미신고시 舊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1년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대상이나, 법 폐지후 행정처분 근거가 모호해져 최근 3년간(2013~2015년) 미신고자 관리 및 처벌실적이 없음
- 최근 3년간 관세청 통관자료와 위생용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검사자료를 비교한 권익위원회 자료²⁹⁾에 의하면, 전체 통관물량중에서 약 20%만이 위생용품으로 수입신고되는 것으로 추정

28) 위생용품 수입업자가 공급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수요자(발주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지방 식약청 등에 신고

29)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 (위생종이(냅킨 등)) 최근 3년간 수입된 약 6,618톤 중에서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2,568톤으로 약 61.1%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 (이쭈시개) 최근 3년간 수입된 약 2,667톤 중에서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1,892톤으로 약 29.1%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 (1회용 물컵) 최근 3년간 수입된 약 5,020톤 중에서, 공중위생법상 위생용품으로 신고 검사받은 1회용 물컵은 약 3톤(0.06%)에 불과, 나머지 5,017톤은 「식품위생법」 상 ‘기구’류로 신고·검사받았거나 未신고·無검사 통관으로 추정
- (1회용 숟가락) 최근 3년간 수입된 약 89톤 중에서 공중위생법상 위생용품으로 신고 검사받은 숟가락은 약 12톤(13.5%)에 불과, 나머지 미신고된 77톤은 「식품위생법」 상 기구류로 신고·검사받았거나 未신고·無검사 통관으로 추정
- (1회용 젓가락) 최근 3년간 수입된 약 56,806톤 중에서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52,573톤으로 약 7.5%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표 8> 최근 3년간 수입위생용품 통관 및 검사현황 비교

(단위 : kg)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계	111,297,803	24,462,382	86,835,421 (78.0%)	143,435,511	23,282,085	120,173,426 (83.8%)	143,884,816	24,956,705	118,928,111 (82.7%)
일회용 물컵	1,235,744	-	1,235,744 (100%)	2,045,058	1,347	2,043,711 (99.9%)	1,739,463	1,808	1,737,655 (99.9%)
일회용 숟가락	28,404	9,517	18,887 (66.5%)	25,670	216	25,454 (99.1%)	34,731	2,286	32,445 (93.4%)
일회용 젓가락	17,518,053	16,363,306	1,154,657 (6.6%)	19,321,568	18,069,572	1,261,996 (6.5%)	19,966,317	18,150,221	1,816,096 (9.1%)
위생종이	2,169,317	767,282	1,402,035 (64.6%)	4,117,009	889,912	3,227,097 (78.4%)	3,310,674	910,415	2,400,259 (72.5%)
이쭈시개	813,955	684,205	129,750 (15.9%)	1,025,456	581,000	444,456 (43.3%)	827,402	626,514	200,888 (24.3%)
행금보조제	89,532,330	6,624,995 13,007	82,894,328 (92.6%)	116,900,750	3,689,591 30,447	113,170,712 (96.8%)	118,006,229	5,232,735 32,726	112,740,788 (95.5%)

※ 신고 : 식약청 ‘위생용품 관리시스템’상 신고현황

※ 통관 : 관세청 통관실적증 식약청에 신고한 위생용품과 HSK, 영문명이 동일한 자료 추출

(예 : 숟가락은 HSK 3924100000, 3924909000, 4419002010, 4419002090중 영문명이 SPOON인 자료)

※ 통관실적 자료상 세척제와 행금보조제 구분 곤란(동일한 영문명 사용)

※ 출처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 또한, 현재 舊 「공중위생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기존 위생용품들(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은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통관 안전관리체계 미흡
 - 제정안에 따라 신규품목으로 추가예정인 기저귀 등 10종의 품목의 경우, 기저귀 등 일부 공산품은 현재 타 법령에 의해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위생용품으로 이관시 기존 품목의 경우와 같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未신고·無검사 통관사례가 여전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업체들의 계도와 더불어, 수입위생품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통관 전에 세관장이 위생용품의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적합여부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無검사 통관을 근절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위생품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세관당국의 요건승인 관련 행정부담 증가의 문제가 발생수 있음
- (개선방안) 위생용품 통관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및 세관당국의 행정부담 감축 등이 동시 달성 가능한 해결방안 필요
 - 모든 위생품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대신, '통관 자율확인우수기업'제도³⁰⁾를 도입하여 획일적 물품관리에서 차등적 기업관리로 관리 패러다임을 재편하여 타 규제기관(관세청)의 행정부담 감축과 동시에 통관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30)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 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함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 2)

2) 위생용품의 유니패스 미연계로 업계 행정불편 방지

□ (문제점) 위생용품이 유니패스³¹⁾ 이용대상 수입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자가 수입시마다 식약처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검사완료 후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지방식약청 등을 또다시 방문하는 등 2회 직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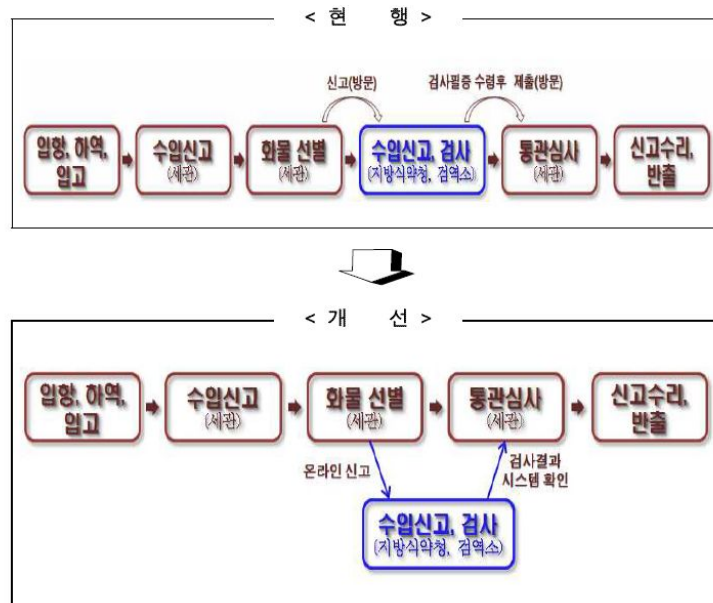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방문 불필요
- 위생용품은 ‘유니패스’대상에 미포함, 수입신고 및 검사필증 수령 시 검사기관 2회 직접 방문 필요

□ (개선방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일원화·전산화를 통한 위생용품 업계 편의성 제고

○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 대상에 위생용품 추가

- 수입업자 :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입 신고 및 검사결과 확인
- 관세청 : ‘유니패스’내 위생용품 수입신고 기능 개발(신고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 세관장이 시스템내에서 수입요건 구비 여부(검사결과) 확인
- 식약처 : ‘위생용품관리시스템(수입식품검사시스템)’과 ‘유니패스’ 연계

<그림 6> 위생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 출처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익위원회 의결 자료, 2016

31) 유니패스(UNI-PASS)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물품을 수출입할 때 거치는 신고, 검사, 세금 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관세청 소관 시스템

3) HSK ‘기타(other)’로 연계된 위생용품의 관리 효율성 저하

- (문제점) 일부 위생용품에 연계된 세관장확인 세번(HSK)이 특계되지 않은 ‘기타’세번(품명: Other)³²⁾로 분류되어 있어 통관관리 효율성 저하
 - 위생용품 수입자가 세관장 확인을 회피하고자 제도 악용 가능
- (개선방안) 수입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명 표준화
 -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기타’ 세번 중에서 세분화 필요성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품명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품명 코드로 수입신고하게 하는 등 국내 진입단계부터 촘촘한 화학 안전망 확보 필요
 - HSK 10단위까지는 관세율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세분화된 확장코드는 관세율 이외의 구체적인 표준품명과 규격 관련사항이므로 관세청에서 관리가능

32) HSK는 무역량이 많거나 또는 무역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특계시키고 있으며, 누락되는 품목을 없게끔 하기 위해 잔여호적 성격을 가지는 ‘기타(other)’호를 두고 있음. 즉, 여러 기능이 복합되어 있고 주기능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 대비한 분류원칙인 ‘최종호 분류원칙(통칙 3. 나)’에 의하여 ‘최종호’인 ‘기타’품목에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됨

제3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HSK의 연계

1. 품목분류제도 개요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연계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세분화 방안

제2장 위생용품에 대한 HSK연계

1. 품목분류제도 개요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국제협약(HS협약)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세계관세기구)에 의해 제정·권고되는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이를 약칭하여 HS(Harmonized System)라 칭함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품목분류를 통일시키고자 '83년 제정하여 '88.1.1일부터 시행 중인 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그 동안 5차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7년에 제 6차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일·EU 등 180여개 국에서 사용 중
- HS품목분류표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CCCN(관세부과 목적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과 SITC(UN이 권고한 무역통계 목적의 품목분류표)를 모체로 제정된 다목적의 국제통일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법원으로 사용
- HS는 호(Heading : 4단위)와 소호(Subheading : 6단위) 및 관련코드, 부(Section)·류(Chapter)·소호(Subheading)의 주(Note)와 'HS해석에관한일반통칙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GRI)'등을 포함한 품목분류표를 의미하며, 관세·통계·운송·보험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목적·다용도의 국제품목표임³³⁾
- HS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에 HS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 품목분류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

33) HS협약 제1조

- 첫째, HS의 호 및 소호와 관련코드 번호를 추가 또는 조정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 둘째, HS의 해석에 관한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여야 하고, 부·류·호 또는 소호의 범위를 수정해서는 안되며
- 셋째, HS의 번호순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 넷째, HS에 설정된 6단위 범위내에서 세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함³⁴⁾

□ HS의 연혁

- 국제무역의 원활화 및 표준화의 일환으로서, 수출입되는 상품에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1931년도의 제네바 관세품목표를 시작으로 1959년 BTN, 1976년 CCCN 품목분류표로 발전되어 왔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HS품목분류표를 사용
- HS 이전의 품목표는 주로 관세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목적·다용도를 지향하는 현행 HS와는 큰 차이가 있음
- HS협약은 1988년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어 왔으며 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상품 출현, 상품의 다양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함임

□ HS 구조 및 품목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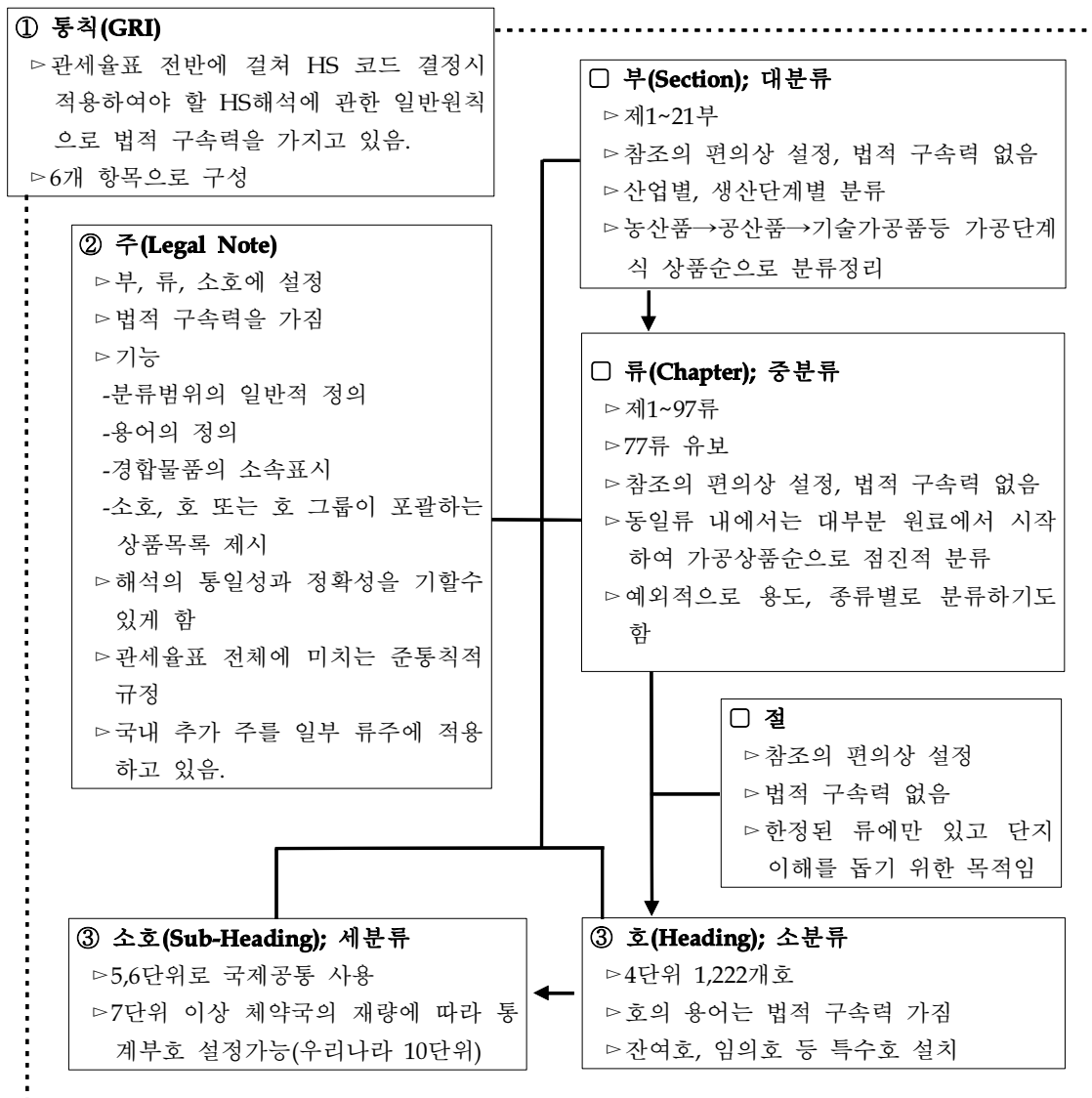
- 국가간 상거래되는 모든 물품이 분류될 수 있도록 상위차원(대분류) 수준에서 21개의 부(Section)로 수평배열하고, 각 부는 중위차원으로 97개류(Chapter)로 중분류 되었으며, 각 류는 1,222개의 호(Heading)의 소분류, 또한 각 호는 5,052개의 소호(Sub-Heading)로 세분류 되는 순으로 구성
- 또한 품목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통칙(General Rules)과 부, 류, 호, 소호의 분류범위, 한계,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주(Note)를 두고 있음
- 실무적인 HS의 국제공통단위는 6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각 계약국이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는 국제공통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10단위 소호를 사용함

34) HS협약 제3조

<표 9> HS품목표의 구성

구 분	내 용	법적 구속력
통칙(General Rule)	- 기본적인 분류원칙 제공 - 총 6개 규정	국제협약
부(Section)	- 대분류로서 21개의 부가 존재	없음
류(Chapter)	- 중분류로서 97개의 류가 존재	없음
절(Sub-chapter)	- 참조의 편의상 설정 - 일부 류에 존재	없음
4단위 호(Headings)	- 류를 소분류 한 것으로 4단위 번호로 구성 - 1,222개 호	국제협약
6단위 소호(Sub-headings)	- 호를 세분한 것으로 6단위 번호로 구성 - 5387개 소호	국제협약
부의 주(Note)	- 부의 분류범위를 설정	국제협약
류의 주(Note)	- 류의 분류범위를 설정	국제협약
소호의 주(Note)	- 소호의 분류범위를 설정	국제협약

<그림 7> HS 품목분류체계



□ HSK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제도는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우리나라의 관세율 및 통계 등의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관세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 재무부고시 제87-12호(1987.7.1)로 제정될 당시에는 “한국통일상품분류”로 명명되다가 제4차 개정(재무부고시 제91-22호, 1991.12.16)때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 HSK고시는 1987.7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HSK 제정당시 10,183개 었던 품목수가 15년 현재는 12,243개이며, 우리나라의 관세율 및 무역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음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는 기본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표로 할당관세, 조정관세, 국제협력 관세 등 모든 관세의 기준이 되고 HS협약 품목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됨
- 종전에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3개)로 운용해 왔으나, 2017년 1,222개로 변경됨
- HSK는 무역량이 많거나 또는 무역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특게시키고 있으며, 누락되는 품목을 없게끔 하기위해 잔여호적 성격을 가지는 ‘기타’호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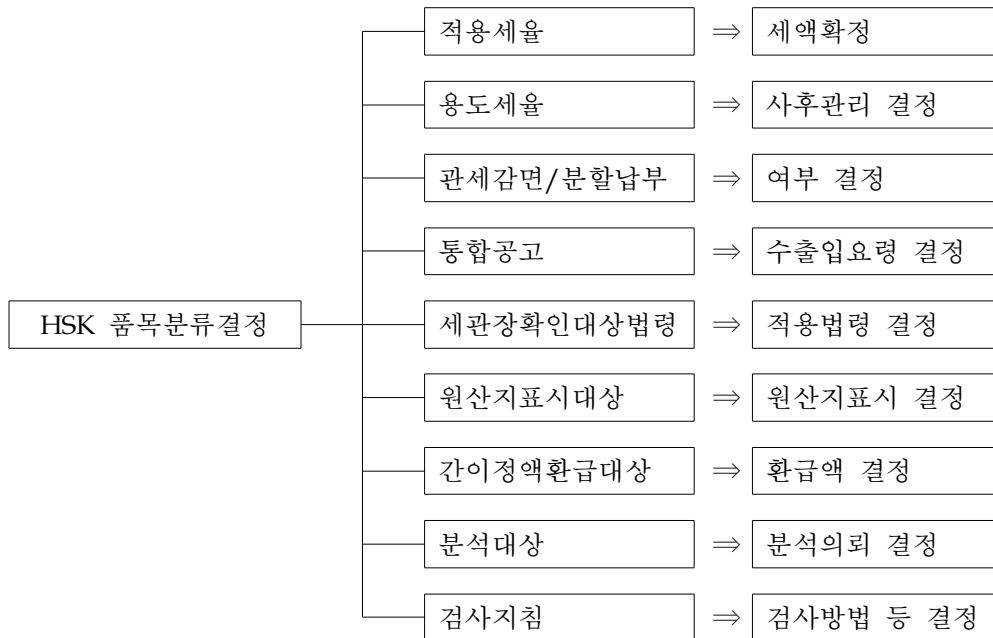
<표 10> HSK의 구조

HSK	품 명	Description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10	번식용의 것	Pure-bred breeding animals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Horses (for farm breeding)
0101.10-9000	기타	Other
0101.90	기타	Other
0101.90-10	말	Horses
0101.90-1010	경주말	Horses for racing
0101.90-1090	기타	Other
0101.90-9000	기타	Other

□ HS의 국내활용현황

- 우리나라는 1962년에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TN)을 도입하여 1987년까지 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CCCN)³⁵⁾, 1988년 이후 부터는 HS를 기준으로 한 품목분류표를 활용
-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關稅率表)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과세대상(Tariff Items)별로 기본관세율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HS 체약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의 근거가 됨
- 이러한 HSK에 따라 실행관세율, 통합공고 등 행정규제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국내에서 발표되는 각종 수출입동향에 관한 통계 역시 HSK를 기초로 산정
- 2017년 HSK 코드의 품목수는 12,243개이며 매년 기재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조정하고 있음

<표 11> HSK의 실제활용



35) 1955년 7월 관세협력이사회가 브뤼셀에서 채택한 것으로, 원명은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이다. 1976년에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개칭하며 간략히 CCCN이라고 불리운다. 1988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가 채택되기 전까지 세계 132개국이 국내 관세율표로 사용하였다.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연계

- 향후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지정을 위해서는 각 품목별로 정확한 HSK 코드 연계가 필수적이며 과업종료 후 관세청과 품목분류 최종 협의 필요

1) 1회용품의 정의 명확화

- 1회용품의 정의

- 환경부 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1회용 포크, 나이프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1회용 포크, 나이프 :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포크, 나이프

- 이와 같이 1회용에 대한 정의는 물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바,

－ 본 보고서에서는 1회용의 재질은 '합성수지제', '목제', '전분제'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위생용품수입업체의 위생용품 재질 정보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연계

- 위생용품 신규품목 10종에 대한 수입 품목 코드 조사 및 품목코드 마련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경우는, 종이행주와 종이타월을 제외하고는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저귀 등 일부 품목은 해당법령상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기지정된 품목도 있는 바,

－ 기존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의 오류정비작업과 더불어 각 위생용품의 HSK연계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며 수행한 HSK연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회용 포크·ナイ프의 HSK 연계

<표 12> 1회용 포크·ナイ프의 물품 설명

물품개요	- 1회용 포크, 나이프 :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포크, 나이프 (※ 정의 출처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용도, 규격, 재질	- 합성수지, 대나무, 그 밖의 나무
물품사진	
주요 거래 품명	포크(Fork), 나이프(knife)

<표 13> 1회용 포크·ナイ프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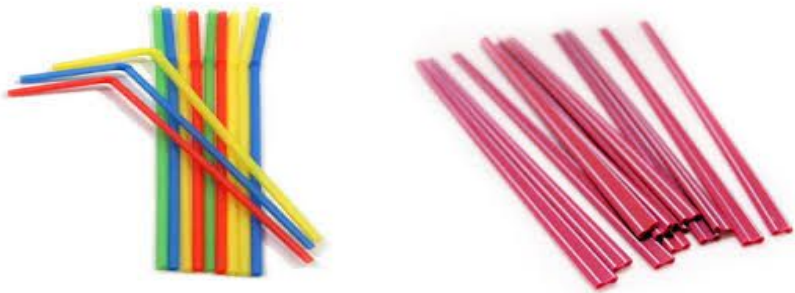
품명	미국	일본	중국	EU
1회용 포크	3924.10.4000	3924.10.000	3924.10.00	3924.10.0090
	4419.19.1000	4419.19.000	4419.19.00	4419.19.0000
	4419.90.1000	4419.90.900	4419.90.90	4419.90.1000 4419.90.9000
1회용 나이프	3924.10.4000	3924.10.000	3924.10.00	3924.19.0090
	4419.19.9000	4419.19.000	4419.19.00	4419.19.0000
	4419.90.9000	4419.90.900	4419.90.90	4419.90.1000 4419.90.9000

<표 14> 1회용 포크·ナイ프의 HSK 연계

HSK	품명(10단위)	재질	세관장 수입요령	통관공고 수입요령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플라스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자정식품·의약품 안전장비에 신고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합성수지제 주방 용품 및 일반용품
4419.19-0000	기타	대나무 재질		
4419.90-9000	기타	그 밖의 나무로 만든 것		

(2) 1회용 빨대의 HSK 연계

<표 15> 1회용 빨대의 물품 설명

물품개요	- 폴리프로필렌(경질)제의 음료용 빨대로 상단에 휠 수 있도록 주름져 있거나, 주름이 없음
용도, 규격, 재질	- 합성수지
물품사진	
주요 영문 거래 품명	straw, drinking straw

<표 16> 1회용 빨대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품명	미국	일본	중국	EU
빨대	4823.90.8600	4823.90.200	4823.90.90	4823.90.8580
	3917.32.0020	3917.32.010	3917.32.00	3917.32.0010
	3917.32.0010	3917.32.020		3917.32.0091
	3917.32.0050	3917.32.030		3917.32.0099

<표 17> 1회용 빨대의 HSK 연계

HSK	품명(4단위)	품명(10단위)	세관장	통관공고	비고
3924.10-0000	3924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식품첨가물 간접 · 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자생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하여 야 한다	[품공법] 3. 다음의 것은 제2장 제11절 제2조의 2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 일모델 제품에 한하 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합성수지제 주방 용 품 및 일반용품	1회 용포 크, 나이 프 세번
3917.32-1000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조인트(joint)·엘보 (elbow)·플랜지(flange)]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32-9000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조인트(joint)·엘보 (elbow)·플랜지(flange)]	기타			

(3)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HSK 연계

<표 18>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물품 설명

물품개요	- 펄프 주성분에 고분자 흡수체를 혼합한 흡수층을 종이제 시트 등으로 감싸고 허리 양쪽에 테이프형 밴드를 부착한 일회용 기저귀형 위생용품 - 위생용 깔개매트 포함(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것)
용도, 규격	- 성인용, 어린이용(만 13세 이하), 환자용, 일자형, 팬티형, 테이프형(접착 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물품사진	 
	<팬티형 기저귀> <위생용 깔개매트>
주요 영문 거래품명	diaper, nappy, baby napkin, babies napkin, napkin liner baby, napkin liner babies, , sanitary towel babies

<표 19>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HSK 연계

HSK	품명	세관장확인고시 수입요령	비고
4803.00-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것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공산품동일모델확인또는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을받고수입할수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것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공산품동일모델확인또는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을받고수입할수있음. 다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4818.90-0000	기타	품공법 상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19.00-1010	유아용냅킨과냅킨 라이너(napkinliner)	품공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19.00-1090	기타	품공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사법(세관장) ① 탐본, 생리대, 팬티라이너
9619.00-2000	방직용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품공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19.00-9000	기타		

<표 20> 기저귀(성인용, 어린이용)의 품목분류 해외 사례

품명	미국	일본	중국	EU
기저귀	9619.00.0500	9619.00.100	9619.00.11	9619.00.3000
	9619.00.1100	9619.00.200	9619.00.19	9619.00.5010
	9619.00.1530	9619.00.300		9619.00.5090
	9619.00.2100			9619.00.8100
	9619.00.2500			9619.00.8900
	9619.00.3100			
	9619.00.3300			
	9619.00.4100			
	9619.00.4300			
	9619.00.4600			
	9619.00.4800			

□ 현행 세관장확인고시 상 일회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세번 정정 필요

- 현행 세관장확인고시上 일회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HSK4803.00-9000은 신성질별 분류체계에 의하면 화장지(가정용 제외)에 해당하는 세번으로 HSK연계 오류로 판단되는 바, 세관장확인고시 별표2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저귀 세번의 3개년도 수입실적 비중 현황

- (신고건수기준) 연계된 5개 기저귀 세번에 대한 수입실적분석 결과, 2015~2016년 수입건수가 2014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보이나, 금액기준으로는 지난 3년간 증가세 시현

※ 수입신고건수(건) : 10,644(2014년) → 4,414(2015년) → 4,888(2016년)

수입금액(US 천\$) : 66,269(2014년) → 85,650(2015년) → 98,736(2016년)

- 지난 3년간 HSK 9619.00-1090, HSK 9619.00-9000으로 수입신고되는 기저귀 신고건수가 전체 5개 세번 총 수입신고건수의 60% 이상을 차지

- 5개 세번 중 매년 가장 많은 수입신고비중을 차지하는 HSK 9619.00-1090으로 신고되는 기저귀 수입건수는 감소세를 시현한 반면, 기타세번인 HSK 9619.00-9000로 신고되는 기저귀 수입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32.3% 비중 차지

- HSK 4818.90-0000, HSK 9619.00-2000으로 신고되는 기저귀 수입은 매년 0~15%의 비중을 나타냄

- (금액기준) 수입액은 매년 증가세를 시현하며, 2016년에는 98,736천불 수입액